

남북 동해선 연결 빠르면 11월말 착공식

고위급회담서 합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돌입
평양공동선언 이행절차 본격화
22일 개성서 산림협력분과회담
동해관광특구 공동연구 착수

남과 북은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12월 초에 열기로 15일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동해관광공동특구 구성을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 및 화상 상봉을 위한 남북 실무 분과회담 일정도 확정되는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보다 앞선 이달 하순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국도 7호선 등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 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분과



『평양선언 이행』 손잡은 남북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회담은 오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열리면 도와 산림청 등이 준비해 온 대북 양묘지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은 또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남북직접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

울러 평양정상회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성을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고위급회담에서는 2020하계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진출 및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 회담(10월 말)과 전염성 질병 확산방

지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0월 하순) 등의 일정도 합의했다.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과 관련한 남북 간 실무회의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15일 고위급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참가했다. 서울=이규호기자

무면허 업체 시공 모른채 준공허가 내줘

원주 대규모 복합쇼핑센터 리모델링 공사 위법 여부 논란

원주의 대규모 복합쇼핑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무면허 업체에 의해 실시되고 원주시가 준공 허가까지 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원주시 명륜동 A쇼핑센터는 2010년 원주시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착공 허가를 받아 공사 중단과 재개 등을 거쳐 7여년 만인 지난해 7월 공사를 끝마쳤다. 하지만 착공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B업체가 참여했

으나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고 B업체는 2013년 폐업했다. 대신 중단된 공사는 지난해부터 C업체가 맡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C업체는 종합건설업이 아닌 전문건설업 종류인 토공·면허만 가진 업체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체는 연면적 1만 3,000여㎡ 건물의 증축, 내부 수리를 총괄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

토공 면허 업체가 공사 마무리 원주시 사실 파악조차 못해 쇼핑센터 권익위 조사 진행 중 시 "위법 뎀 형사고발 조치"

시는 준공 허가를 내주면서 시공업체가 당초 착공 허가를 내준 B업체가 아니라 C업체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시공사가 바뀌면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알려야 하지만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결국 A쇼핑센터는

10여년 만의 재개장을 목전에 두고도 이 같은 리모델링 공사업체의 위법 여부를 놓고 불거진 건물주와 구분 소유주 간의 분쟁 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준공 허가는 시에서 위임한 전문 건축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졌다"며 "권익위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주=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지역농협 최저가 입찰 관행 지적

농협 사업장 공사 임금·공사비 체불 논란 심화

【원주】속보=원주 모 농협에서 짓고 있는 사업장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들이 공사대금과 임금 3억원을 떼일 위기(본보 지난 12일자 10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공사 발주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 농협에서는 지난해 호저로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사업장을 짓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지만 두 번이나 유찰된 끝에 결국 서울의 D종합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두 번의 유찰 이유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지적해 온 지역농협의 최저가 입찰 관행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도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일반 관급 공사의 경우 설계가의 85% 선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이뤄지는 반면 농협은 절반 또는 그 이하에도 최저

값은 유찰·부실공사 등 야기 하청업체 “책임 미뤄 허탈” 농협 “우리도 같은 피해자”

가이면 낙찰되고 있다. 이번 모 농협 사업장 공사도 24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공사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대부분의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이 거듭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계약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사 시작부터 최저가로 발주한 농협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더욱이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업체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

는 구조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지역농협에서 최저가로 발주해 완공한 시설의 경우 저가 부자재 사용과 부실공사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예도 있다. 특히 세 달이 넘도록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발주처인 농협이 시공사에 책임을 넘긴 것은 적어도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금체불 업체들은 “우리도 지역에서 농협과 거래하는 고객이고 수백만원만 못 받아도 당장 어려움에 빠질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데 농협에서는 시공사에서 해결할 일이라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모 농협 관계자는 “농협도 피해자”라며 “시공사는 공사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남강원 5개 군-북강원 5개 군' 연결도로 추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평화도로망 구축 사업 본격화
 양구 두타연·화천 을지전망대
 철원 월정역·고성 통일전망대
 인제 원통부터 북 금강군 유력

■ 남북접경지역 평화도로망



정부가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추진 중
 안 가운데 강원도가 DMZ(비무장지대)
 를 공유하는 접경(평화)지역 남북 5개
 군을 상호 연결하는 남북지방도 사업을
 본격화한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남북
 당국 간 합의로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도는 철
 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과 북측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평화도로 구
 축 준비에 나섰다. 남북 접경지역 연결
 도로망은 △철원군~(북)철원군△화천
 군~(북)김화군△양구군~(북)창도군
 △인제군~(북)금강군△고성군~
 (북)고성군이다.

도는 5개 남북 접경지역 평화도로망
 구축 세부안 논의에 착수,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 본격화되면 남북 접경지
 역 군도의 지방도 승격을 통해 남북 평화

도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5개 군의 평화도로 구축망은 북강원도
 내 금강에서부터 김화군, 창도군, 고성
 군, 철원군 등 북측 접경지역을 연결하
 는 것이다. 인제군의 경우 세부 노선안
 이 도출, 도는 대 최 근 현지 실사를 마쳤
 다. 인제군은 북면 원통리~서화면 가진
 리(40km)~북한 금강군(35km)을 잇는 지
 방도 453호선과 군도 1호선 연결이 유력
 하다. 인제군은 동서고속철도 인제역 연
 결 구간인 상남면 하남리 인제IC~북면
 원통리(35km) 구간에서부터 평화도로
 를 연결해 줄 것도 도에 건 의 했다.

양구군은 31번 국도와 연계되는 두타
 연 지역이, 화천군은 을지전망대 인근,
 철원군은 경원선 남측 구간으로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안쪽에 위치한 월정역 인
 근, 고성군은 통일전망대를 경유해 북측
 으로 인접한 지점 등이 북측 접경지역과
 연결되는 관문이다. 군도의 지방도 승격
 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점검
 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사전 협의도 필
 요한 상황이다.

도는 남북 접경지역 5개 군의 평화도
 로 연결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 지역과
 후속 논의를 갖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을 북측 군과 연결
 하는 평화도로 구축 준비 작업을 도 차원
 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선
 안은 각 지역과 후속 논의를 거친 후 확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내달 착공식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이달 중 산림·체육회담 잇따라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를 위한 착공식이 다음달 말이나 12월초
 에 열린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
 화의집에서 5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
 다. 남북은 다음달 말이나 12월초 착공
 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다음달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조사
 일정을 연장하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동·서해선 도로 공
 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이달 중에 남북산림협력분
 과회담과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남북
 체육회담을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오
 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하는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는 소나
 무재선충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생
 태계의 보호 및 복원 문제 등을 다루고 10
 월 하순쯤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남
 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는 전염성 질병
 의 유입 및 확산방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달말 개최 예정인 남북체육회담에서는
 2020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
 제경기 공동 진출과 2032 하계 올림픽 남
 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한다. 다음달에
 는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금강
 산지역 이산가족 면회속 복구와 화상상
 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논의한다. 진종인

첫삽 뜬지 만 5년째... '성남시의료원' 개원 왜 지연되나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지사가 셈법을 바꿔 얻은 100원은 과연 누구의 손해로 귀결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발주했지만 박한 공사비 탓에 유찰과 공사 중단을 반복 중인 성남시의료원 건설현장. 안윤수기자 ays77@

‘이재명式’ 공사비 깎기 셈법 의료복지 저하 ‘부메랑’ 됐다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건립 중인 성남시의료원을 보면 답이 나온다. 옛 성남시청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 509개 병상 규모로 건설 중인 성남의료원은 2013년 11월 첫삽을 떴다. 이 지사는 이듬해 의료원 부지에서 성남시장 재선 출마선언을 했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제값 주는 공사 대신 ‘이재명식 셈법’에 따라 싸게만 발주하면서 공사 시작 전부터 차질을 반복했다.

가격보다 기술력에 무게를 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지만, 정작 박한 공사비 탓에 세 차례나 유찰됐다. 4번째 입찰에서도 공사비를 그대로 둔 채 실적기준만 완화했다. 문턱을 낮추자 입찰이 성사됐고, 물량 확보가 급했던 울트라건설팀이 예정가(1436억원)보다 300억원 산 1131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관련기사 3면

성남시장 시절 싸게만 발주 유찰 세번... 수주업체 2곳 법정관리로 공사중단 반복 “결국 성남시민의 손해로...”

결국, 탈이 났다. 착공 이듬해 울트라건설이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권을 넘겨받은 삼한기업마저 2017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성남 시민단체들은 “시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100만 시민에겐 청천벽력같은 비보”라며 반발했다. 2017년 개원 예정이던 의료원은 2년 뒤인 2019년 하반기에나 문을 연다.

공사비를 쥐어짜 예산을 아끼려다가 건설한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지 못했고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은 “성남시의료원 사례는 발주자가 공사비를 정하면 기업들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갑질(불공정행위)”이라며 “1차 피해자는 시민이고, 2차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후에도 서현도서관 등 주요 시민이용시설 건설사업에 규정에도 없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가 중앙정부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올해 6월부터는 공사비를 더 깎겠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재추진 중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전체 공사비가 줄어 건설 일자리가 최대 1만2000개, 연관 산업 포함 시 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발주기관 지위를 악용해 얻은 불공정 이익이 결국 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형기자 kth@

‘싼값 발주’가 부른 인프라 부실... 공공시설 건립 지연 사태

긴급진단 **SOS!** 생활SOC!

⑤ 이재명 리스크에 흔들리는 지역 인프라

성남시의료원 개원 지연 사태는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이 부른 참사다.

지난 2003년 성남시 수정·중원구 지역 주민 55만명이 이용하던 종합병원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시작된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의료원 건립사업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종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추천하는 공공사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하지만,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의 시행착오를 ‘성과’로 해석한다. 특히, 공공건설분야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대표 정책이라며 내세우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무조건 싸게’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성남시의료원 저가 공사비의 확장판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성남시의료원이 발주처가 낮은 공사비를 강요한 불공정행위라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은 공사비 삭감을 더 앞당겨

공사비 쥐어짜기로 예산절감 시장시절 ‘성과’로 내세우지만... 성남시의료원 서현도서관 등 건립 차질로 시민 불편 초래

수주업체들도 ‘적자시공’ 신음 무리한 정책에 지역경제 명들어

인 예정가격 단계로 앞당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에 대해 규정을 어기면 서까지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발주했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 218억원이던 서현도서관 공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탓에 11억원 낮은 207억원으로 발주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품질 문제가 없었고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현장에서 실행률 100%를 넘기며 적자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현도서관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실행률이 110~120%로 추정된다”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 중”이라고 토로했다.

서현도서관 외에도 표준시장단가를 불법 적용해 발주한 ○○어린이집,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관 등도 현장 실행률이 10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시설 시공사 관계자는 “실행을 맞추려고 하도급 공사비를 줄여 적영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B사 대표는 “당시 서현도서관 등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입찰 경쟁률은 지역 평균 경쟁률보다 훨씬 낮았다”면서 “싼값에 좋게는 이상일 뿐, 저가 공사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고 귀띔했다.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예산을 4% 넘게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한 공사들도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투성이다.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주한 계약금

액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격을 뽑아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가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 확·포장(49억1500만원~44억1700만원) △포천 삼팔교 재가설(52억7200만원~50억3200만원) △오산 소방서 신축(76억400만원~73억500만원) 등 주요공사의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조차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영준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경우 이미 지난 15년간 큰 폭의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산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실정임에도 100억원 미만 공사가 지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공사비 감액 정책은 지역경제를 망들리게 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

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때 전체 노무비 감소분은 2300억~5900억원으로 추산됐다. 건산연은 이런 노무비 감소로 1만2000~2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형기자 kth@



아하! 그렇구나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범위

Q 당사는 당사 소유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A사와 계약금액 1000억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A사에 공사대금으로 9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마감공사를 하던 도중 파산으로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가 당사에 하도급대금 50억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B사에 하도급대금 50억원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사(수급사업자)가 A사(원사업자)의 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귀사(발주자)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귀사는 일단 B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사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귀사의 경우 A사에 1000억원의 공사대금 중 900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B사가 귀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

한 하도급대금은 50억원이므로, 이는 귀사가 A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100억원의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대법원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방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방수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그런데 B사는 귀사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이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마감공사 이전에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귀사가 A사에 지급한 900억원의 공사대금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귀사는 B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A사에 지급한 900억원의 공사대금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